**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비교법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김종철[[1]](#footnote-1)

**1. 서론**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 하지 못한 많은 농어촌 총각들을 장가 보내주고, 그들 사이에서 한국인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면이 없지 않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제도이다. 비록 선의를 가지고 결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주 여성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없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으니 그 목적에 공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돌아가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이혼한 이주 여성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는 식으로 한국 사회의 필요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 해서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된 제도를 설명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체류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

**가. 영주 비자나 귀화 허가를 받아 체류**

한국에서 국적이나 영주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 후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귀화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영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2인 거주 자격을 2년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하지만,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의 다른 요건[[2]](#footnote-2)도 필요하지만 귀화의 기간 요건, 즉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일반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지만, 간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 2년 이상 혼인 상태로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3]](#footnote-3) 한다.

따라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 한 상태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간이 귀화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5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후에 일반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 한 상태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귀책사유 없이 이혼하거나 이주 결혼 여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자인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귀화의 기간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혼 했지만 혼인한 상태로 보아 해당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간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

그런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개는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결혼 이주 여성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자”를 이혼과 관련해서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한 자”로 새기고 있다.

그러나 간이귀화의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혼이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이혼이 결혼 이주 여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즉 이혼에 결혼 이주 여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과 국민인 배우자가 합의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이혼 합의가 결혼 이주 여성의 ‘잘못’ 혹은 책’은 아니므로 위 결혼 이주 여성은 간이귀화의 기간 요건의 예외를 적용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국민의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에 있어서 ‘책’이라는 것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유책주의에서의 ‘책’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인 배우자가 ‘책’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결혼이주 여성과 국민인 배우자 모두에게 ‘책’이 없는 경우에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4]](#footnote-4)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문서는 입증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해서 결혼 이주 여성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 귀화의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양육권이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자녀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언제든지 사정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면접교섭권을 갖는 경우를 차별화하지 말고 간이귀화의 기간 요건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김재련 변호사).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 후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간이 귀화의 기간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살펴볼 입법적으로는 영주 비자를 부여하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F-2 비자를 부여하여 체류하게 한 뒤에 추후 일반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영주비자,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체류**

이처럼 이혼 당시 귀화허가를 받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어 귀화 신청을 한 후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에서의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귀화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한국에 체류할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귀하신청 후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12개월 이상 되는데, 처음에는 귀화신청 자격조사하고 그 이후에 필기시험과 면접조사 등으로 귀화허가 결정을 위한 적격조사를 한다고 한다).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은 일반 귀화가 될 때까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화 요건을 충족한 후 귀화 신청 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귀화 전 이혼 한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해서는 혼인 중에는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F-2라는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국민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F-2 비자로 체류를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상실 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2조 [별표 1]).

그러나 ‘국민의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이혼 당시 여전히 F-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 국민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와 나)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F-2로 체류할 수 있다(이혼에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를 허가하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이주 여성에게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체류를 허가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관계 없이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만 두고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와 라)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없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5]](#footnote-5)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F-2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해 준다(국내에서 혼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한다). 마)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방문 동거 비자인 F-1로 자격을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위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1년씩 체류를 허가한다.

다음으로 2)이혼 당시 이미 F-2 비자 연장을 하지 못했거나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철회 등으로 F-2라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G-1(기타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관계 없이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나)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F-2로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 1년)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G-1비자를 가지고 있으되, 이혼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없으며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F-2-1로 변경할 수 없어서 계속 G-1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출국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 당시 F-2 비자로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도 없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F-1으로 체류할 할 수 밖에 없다.

**3.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외국의 제도**

**가.독일**

독일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독일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체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일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 이혼한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음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독일 영토 내에서 4년 유지된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가 독일 영토 내에서 1년간 유지되었고 퇴거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법적인 혼인 상태가 독일 영토 내에서 1년간 유지되었고 독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 양육권을 외국인에게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위 3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독일에서 계속 체류하는 것이 어렵다.

**나.프랑스**

관련법에 따르면, 프랑스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 여성은 결혼 일로부터 6월 이후에도 혼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함으로써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단 위 이주 여성의 귀화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일정한 기간 내에 최고행정재판소의 명령을 받아 프랑스 국적 취득을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이 나오는 경우, 이주 여성은 소급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반대 명령과 귀화 신고 사이에 당사자가 한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다.스위스**

이주 결혼 여성은 스위스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하면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다. 후에 결혼이 무효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주 여성이 결혼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스위스 국적을 유지한다.

**라. 일본**

결혼 이주 여성에게 1년 혹은 3년 기간의 배우자 비자가 발급된다. 배우자 비자를 가진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하는 경우 비자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주 여성은 비자의 기간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일본에 머무를 수 있으나 기간이 만기되면 일본을 떠나야 하며, 만약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다른 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이 때에 자녀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고,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 후에 그 일본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하면 그 이주 여성은 제한 없이 갱신되는 장기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혼하는 경우 자녀가 어리다면 일본 법원은 거의 항상 이주 여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일본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주 여성의 대부분 장기거주비자를 가지고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이주 여성이 계속 체류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주 여성은 비자가 만기되기 전까지만 일본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일본에 체류하려면 노동비자를 비롯한 다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외국인 주부들에게 이혼은 곧 본국으로의 출국을 의미하며 이는 이주 여성에게 이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본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이주 여성에게 이혼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퇴거 당하지만, 양육권자인 이주 여성은 장기거주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마. 호주**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임시영주비자를 발급받으며 2년이 지난 후 영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영주비자 기간에 외국인 배우자는 취업, 교육 등에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데, 2년이 지난 후 결혼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비자를 발급받는다.

영주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결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가정 폭력에 포함된다)이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획득한 경우이거나 호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바. 캐나다**

캐나다는 스폰서 제도를 통하여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그들의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도록 할 수 있다. 스폰서 제도는 캐나다인이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3년 동안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보증함으로써 외국인 배우자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캐나다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위해 그의 스폰서가 되어야 하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만약 캐나다 배우자가 스폰서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을 근거로 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

캐나다에서 스폰서 절차가 아직 진행되는 도중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스폰서를 통해 결혼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의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고는 캐나다에서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6]](#footnote-6).

**사. 미국**

미국은 결혼 후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2년이 지나기 전 90일 내에 미국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청원하여 완전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은 ①결혼이 선의에 의해 성립되었으나 이혼이나 무효가 된 경우 또는 ②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②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가 학대를 받았다는 증명[[7]](#footnote-7)이 있는 경우, ③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8]](#footnote-8)에는 배우자와 공동의 공동 청원의 유예를 신청하여 미국인 배우자의 협력 없이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결혼이 선의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위 결혼이 미국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족하다.

**4.결론**

체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퇴거 당할 까봐 두려워 국민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가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반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체류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 동거 기간이 3년 미만인 자의 경우)국민의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신원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이주 여성의 체류에 있어 이혼 한 경우까지 국민인 배우자 측에 의존하고 종속되도록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헌법 제36조와 제10조 등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주 결혼 여성을 수단화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국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선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지 않는 한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든, 한국인 자녀가 있든 없든, 한국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상관 없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 없이 모든 경우에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혼을 한 경우에도 결혼 자체를 소급적으로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결혼의 진정성을 당연히 의심 받아서도 안 된다. 국민들도 부부로 살다 보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선의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스위스나 미국과 캐나다의 입법례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결혼이 남용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런 식으로 이혼한 이주 여성의 체류를 보장하고 있다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남용은 국제 결혼을 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혼한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체류한다고 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체류를 할 것인 것 문제가 된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혼한 이주 여성이 귀화를 쉽게 하도록 하여 체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인 배우자의 가혹행위 등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에는 간이 귀화의 제 요건들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귀화허가를 주자는 입법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동의하기 쉽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아무런 체류자격상 배려를 하지 않는 것 비교할 때 국민인 배우자의 폭행의 피해자에게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제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체류를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지 않을 수 있고[[9]](#footnote-9), 외국인에게 귀화를 쉽게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 문제를 해결할 경우 관련 당국이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국민의 배우자의 가혹행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지금 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궁극적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한 경우 결혼의 선의가 없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영주비자를 취득하게 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이주 여성이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1. 서울공익법센터 APIL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footnote-ref-1)
2. 대한민국의 [「민법」](javascript:selectRefJoLink('민법','20100504','국적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footnote-ref-2)
3. 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footnote-ref-3)
4.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나타난) 판결문, 형사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받은 공소권 없음 이나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문, 배우자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을 설명하는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등 [↑](#footnote-ref-4)
5.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경우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한국인 배우자 귀책사유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footnote-ref-5)
6. 캐나다인 배우자는 별거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 스폰서로서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캐나다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상태를 유지하는데 스폰서 계약을 악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footnote-ref-6)
7. 경찰, 법원, 병원, 학교, 사회 서비스 기관에서 발급한 기록의 사본이나 진술,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보호명령, 보호시설의 원조를 받은 증거 등 [↑](#footnote-ref-7)
8. 결혼 이주 여성이 출국이 다른 외국인이 출국이 초래하는 것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로서 이러한 요인은 배우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 [↑](#footnote-ref-8)
9. 이런 의미에서는 2010.5.4.자 국적법 개정에 의해 2011.1.1.자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수국적이 허용되게 되었지만, 결혼이민자 중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혼인상태가 해소된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은 두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결혼이민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주여성의 귀책사유 없는 혼인관계 해소 심지어 배우자 사망 등의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출신국 국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김재련 변호사). [↑](#footnote-ref-9)